

르네오션 고성 퍼스트뷰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66-8848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입주자 모집공고일		비규제지역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주자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4.03(금)	26.04.13(월)	26.04.14(화)	26.04.15(수)	26.04.21(화)	26.04.24(금)~ 26.05.03(일)	26.05.06(수)~ 26.05.08(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르네오션고성퍼스트뷰.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0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고성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4.13(월)	26.04.14(화)	26.04.15(수)	26.04.21(화)	26.04.24(금)~ 26.05.03(일)	26.05.06(수)~ 26.05.08(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1557-1)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고성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허가민원과 - 20044호(2026.04.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1번지 외 16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9층 3개동 총 263세대

[특별공급 116세대(기관추천 20세대, 다자녀가구 22세대, 신혼부부 50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071	01	074.8300	74	74.8300	26.1878	101.0178	31.9815	132.9993	44.2875	28	2	2	6	-	2	12	16	1
	02	084.9800A	84A	84.9800	29.0295	114.0095	36.3194	150.3289	50.2946	34	3	3	7	1	3	17	17	2
	03	084.9800B	84B	84.9800	28.8996	113.8796	36.3194	150.1990	50.2946	149	14	14	34	4	13	79	70	7
	04	084.9800C	84C	84.9800	30.7996	115.7796	36.3194	152.0990	50.2946	15	1	1	3	-	1	6	9	1
	05	109.8300	109	109.8300	37.2550	147.0850	46.9400	194.0250	65.0019	26	-	2	-	-	-	2	24	1
	06	117.1500A	117A	117.1500	41.0941	158.2441	50.0686	208.3127	69.3342	2	-	-	-	-	-	-	2	-
	07	117.1500B	117B	117.1500	41.0941	158.2441	50.0686	208.3127	69.3342	1	-	-	-	-	-	-	1	-
	08	117.1500C	117C	117.1500	41.1641	158.3141	50.0686	208.3827	69.3342	1	-	-	-	-	-	-	1	-
	09	130.5600	130	130.5600	46.5984	177.1584	55.7998	232.9582	77.2708	1	-	-	-	-	-	-	1	-
	10	137.2300A	137A	137.2300	48.6715	185.9015	58.6505	244.5520	81.2183	1	-	-	-	-	-	-	1	-
	11	137.2300B	137B	137.2300	48.7315	185.9615	58.6505	244.6120	81.2183	1	-	-	-	-	-	-	1	-
	12	143.4900	143	143.4900	51.2400	194.7300	61.3260	256.0560	84.9233	1	-	-	-	-	-	-	1	-
	13	147.2300	147	147.2300	52.5450	199.7750	62.9245	262.6995	87.1367	1	-	-	-	-	-	-	1	-
	14	148.7600	148	148.7600	53.1457	201.9057	63.5783	265.4840	88.0423	1	-	-	-	-	-	-	1	-
	15	183.7600	183	183.7600	65.7229	249.4829	78.5369	328.0198	108.7567	1	-	-	-	-	-	-	1	-
합 계										263	20	22	50	5	19	116	147	12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생활지원센터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소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 등 기타 인허가 사항에 따라 대지면적 및 대지지분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 정리, 진입로(가감속 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 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변경, 공용부사용제한설정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 공용부지분 등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청약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 분(약식표기)		74	84A	84B	84C	109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1	3	-	-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4	1	-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3	-	-	5
	장애인	-	-	2	-	-	2
	중소기업 근로자	-	-	2	-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3	14	1	2	22
신혼부부 특별공급		6	7	34	3	-	5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4	0	-	5
생애최초 특별공급		2	3	13	1	-	19
합 계		12	17	79	6	2	11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6.09.21.	2026.12.21.	2027.04.21.	2027.09.21.	2028.01.21.	2028.05.22.	
74	101동1호	1층	1	98,735,000	304,265,000	-	403,000,000	5,000,000	15,15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41,050,000
		2층	1	99,715,000	307,285,000	-	407,000,000	5,000,000	15,35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42,450,000
		3층	1	101,920,000	314,080,000	-	416,000,000	5,000,000	15,8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45,600,000
		4층	1	104,125,000	320,875,000	-	425,000,000	5,000,000	16,25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48,750,000
		5층	1	106,085,000	326,915,000	-	433,000,000	5,000,000	16,65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151,550,000
		6층이상	23	109,025,000	335,975,000	-	445,000,000	5,000,000	17,25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55,750,000
84A	102동1호	2층	1	107,310,000	330,690,000	-	438,000,000	5,000,000	16,9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53,300,000
		3층	1	109,760,000	338,240,000	-	448,000,000	5,000,000	17,4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56,800,000
		4층	1	112,210,000	345,790,000	-	458,000,000	5,000,000	17,9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160,300,000
		5층	1	114,415,000	352,585,000	-	467,000,000	5,000,000	18,35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63,450,000
		6층이상	8	118,335,000	364,665,000	-	483,000,000	5,000,000	19,15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169,050,000
	103동6호	3층	1	111,720,000	344,280,000	-	456,000,000	5,000,000	17,8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159,600,000
		4층	1	114,170,000	351,830,000	-	466,000,000	5,000,000	18,3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163,100,000
		5층	1	116,375,000	358,625,000	-	475,000,000	5,000,000	18,75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66,250,000
84B	101동2호 103동 1,2,3,4호	6층이상	19	118,335,000	364,665,000	-	483,000,000	5,000,000	19,15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169,050,000
		2층	5	107,310,000	330,690,000	-	438,000,000	5,000,000	16,9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53,300,000
		3층	5	109,760,000	338,240,000	-	448,000,000	5,000,000	17,4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56,800,000
		4층	5	112,210,000	345,790,000	-	458,000,000	5,000,000	17,9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160,300,000
		5층	5	114,415,000	352,585,000	-	467,000,000	5,000,000	18,35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63,450,000
		6층이상	80	118,335,000	364,665,000	-	483,000,000	5,000,000	19,15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169,050,000
	102동 3,4호	2층	1	109,270,000	336,730,000	-	446,000,000	5,000,000	17,3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56,100,000
		3층	2	111,720,000	344,280,000	-	456,000,000	5,000,000	17,8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159,600,000
		4층	2	114,170,000	351,830,000	-	466,000,000	5,000,000	18,3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163,100,000
		5층	2	116,375,000	358,625,000	-	475,000,000	5,000,000	18,75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66,250,000
		6층이상	42	118,335,000	364,665,000	-	483,000,000	5,000,000	19,15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169,050,000

약식 표기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6.09.21.	2026.12.21.	2027.04.21.	2027.09.21.	2028.01.21.	2028.05.22.	
84C	102동2호	3층	1	107,310,000	330,690,000	-	438,000,000	5,000,000	16,9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53,300,000
		4층	1	109,760,000	338,240,000	-	448,000,000	5,000,000	17,4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56,800,000
		5층	1	112,210,000	345,790,000	-	458,000,000	5,000,000	17,9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160,300,000
		6층이상	12	116,620,000	359,380,000	-	476,000,000	5,000,000	18,8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166,600,000
109	103동5호	2층	1	136,907,800	421,902,000	42,190,200	601,000,000	5,000,000	25,05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210,350,000
		3층	1	139,641,400	430,326,000	43,032,600	613,000,000	5,000,000	25,65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214,550,000
		4층	1	142,602,800	439,452,000	43,945,200	626,000,000	5,000,000	26,3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219,100,000
		5층	1	145,564,200	448,578,000	44,857,800	639,000,000	5,000,000	26,95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223,650,000
		6층이상	22	148,525,600	457,704,000	45,770,400	652,000,000	5,000,000	27,6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228,200,000
117A	103동3호	26,27층	2	213,448,600	657,774,000	65,777,400	937,000,000	5,000,000	41,85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327,950,000
117B	103동3호	25층	1	380,426,000	1,172,340,000	117,234,000	1,670,000,000	5,000,000	78,500,000	167,000,000	167,000,000	167,000,000	167,000,000	167,000,000	167,000,000	584,500,000
117C	103동3호	28층	1	225,066,400	693,576,000	69,357,600	988,000,000	5,000,000	44,4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345,800,000
130	101동1호	29층	1	429,858,600	1,324,674,000	132,467,400	1,887,000,000	5,000,000	89,350,000	188,700,000	188,700,000	188,700,000	188,700,000	188,700,000	188,700,000	660,450,000
137A	102동3호	27층	1	447,627,000	1,379,430,000	137,943,000	1,965,000,000	5,000,000	93,250,000	196,500,000	196,500,000	196,500,000	196,500,000	196,500,000	196,500,000	687,750,000
137B	102동3호	28층	1	373,592,000	1,151,280,000	115,128,000	1,640,000,000	5,000,000	77,000,000	164,000,000	164,000,000	164,000,000	164,000,000	164,000,000	164,000,000	574,000,000
143	103동1호	12층	1	396,827,600	1,222,884,000	122,288,400	1,742,000,000	5,000,000	82,100,000	174,200,000	174,200,000	174,200,000	174,200,000	174,200,000	174,200,000	609,700,000
147	103동2호	19층	1	402,750,400	1,241,136,000	124,113,600	1,768,000,000	5,000,000	83,400,000	176,800,000	176,800,000	176,800,000	176,800,000	176,800,000	176,800,000	618,800,000
148	103동6호	25층	1	406,623,000	1,253,070,000	125,307,000	1,785,000,000	5,000,000	84,250,000	178,500,000	178,500,000	178,500,000	178,500,000	178,500,000	178,500,000	624,750,000
183	103동5호	28층	1	534,418,800	1,646,892,000	164,689,200	2,346,000,000	5,000,000	112,300,000	234,600,000	234,600,000	234,600,000	234,600,000	234,600,000	234,600,000	821,100,000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강원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강원동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고성군) → 기타지역 거주자(강원특별자치도)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2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10%)</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2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고성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tr><th>순위</th><th>내용</th></tr><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고성군) → 기타지역 거주자(강원특별자치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0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비고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고성군) → 기타지역 거주자(강원특별자치도)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9세대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단,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고성군) → 기타지역 거주자(강원특별자치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0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비고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고성군) → 기타지역 거주자(강원특별자치도)																							
당첨자 선정방법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td><td>100%</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이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이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4.21.(화) ~ 2026.04.30(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4.2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일정

서류제출 및 심사기한	- 26.04.24(금)~26.05.03(일)
대상자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일반공급(1,2순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장소	- 르네오션 고성 퍼스트뷰 견본주택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1557-1번지) ※ 운영시간 : 10:00 ~ 17:00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0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일정 및 운영시간, 서류 제출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접수기한 내 미접수 시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홈페이지(<https://www.르네오션고성퍼스트뷰.kr>) 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배정 추첨참여 및 계약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0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년 동안 보관 후 지체없이 파기처리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는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 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 인터넷 청약(https://www.applyhome.co.kr)한 경우 생략
		○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전세사기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자녀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및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노부모부 양 특별공급	○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 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건축물철거결실신고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급신청자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불가

추가사항	○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가점제 청약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일반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 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 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제외)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요양시설,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체류한 경우)인 경우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 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위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 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복무확인서	본인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급신청자(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불가
	○		위임장	공급신청자(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② 전년도 재무재표 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서 (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 서류

해당자격	자산 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소유증빙)	① 부동산 소유현황(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 발급)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위택스(www.wetax.go.kr)
	필수 (자산가액 증빙)	① 소유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② 소유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③ 소유부동산이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이택스(etax.seoul.go.kr) ③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중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전국자치단체)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시군구청(또는 위택스)

- 상기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산증빙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

해당자격	서류구분	확인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팩스불가)	① 해당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 아닌분으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 세 납부자)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및 없는 경우)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①, ② 세무서 ③, ④ 해당직장

- 상기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받은 경우 직인날인 불필요)
- 소득입증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비 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5.06(수)~2026.05.08(금) 10:00 ~ 17:00	르네오션 고성 퍼스트뷰 건본주택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1557-1)	특별/일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에정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합니다.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계약자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한 경우 생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신청 불가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건본주택 비치
	○		수입인지(인지세)		-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이하 : 면제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 초과 : 35만원 - 수입인지 구매처 : [오프라인] 우체국·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		위임장	계약자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위임용), 인감도장	계약자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미지참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40-015-376557	(주)한국토지신탁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상기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 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 공급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단, 부적격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향후 무순위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니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함.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함.
- 본 공급계약(아파트 분양계약서 / 발코니 확장계약서 등)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람.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계약서, 권리의무승계(전매) 등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등(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별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 구비서류를 준용함.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각각 50%)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발코니확장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 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됨.

-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③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④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 ⑤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⑥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참여시 부적격 처리됨.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 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무이자로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 무이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대출로 알선할 예정이나 이는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혜택"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 체결시	잔금(90%) 입주 시
74	20,000,000	2,000,000	18,000,000
84A	25,000,000	2,500,000	22,500,000
84B	25,000,000	2,500,000	22,500,000
84C	25,000,000	2,500,000	22,500,000
109	30,000,000	3,000,000	27,000,000
117A	35,000,000	3,500,000	31,500,000
117B	35,000,000	3,500,000	31,500,000
117C	35,000,000	3,500,000	31,500,000
130	40,000,000	4,000,000	36,000,000
137A	40,000,000	4,000,000	36,000,000
137B	40,000,000	4,000,000	36,000,000
143	45,000,000	4,500,000	40,500,000
147	45,000,000	4,500,000	40,500,000
148	45,000,000	4,500,000	40,500,000
183	50,000,000	5,000,000	45,000,000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대금(계약금, 잔금)	신한은행	140-015-376557	(주)한국토지신탁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로 추가 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우물천장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기본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가전옵션 및 가구옵션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시공 품질에 따라 설치된 난방용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발코니 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에 입주 전 외부샤시 설치 후 입주하셔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외부 샤시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 배수 드레인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인접 확장세대 확장 발코니 단열로 인하여 발코니 안목치수(수평, 수직)가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펜트하우스 타입은 발코니 확장과 비확장 선택에 따라, 창호설치 위치, 마감 형태, 내부 MC기준폭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분양자료 및 도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펜트하우스 타입의 기본형 세대 선택시, 도면 및 분양자료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희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펜트하우스 포함)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색상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 및 브랜드, 모델, 색상, 크기, 개폐방향, 개폐방식,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디자인, 색상 및 규격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냉매배관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미확장형을 선택 시에는 인접한 발코니 확장형 세대의 결로방지 및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 세대의 해당 발코니 벽, 바닥, 천장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돌출 시공되거나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확장 세대의 배관 일부가 비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될 수 있어 미관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위탁사,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무상옵션 포함)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일반가구, 주방가구, 시스템가구 등)와 확장 시 제공품목 등과 구성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희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제공되는 가구 등으로 인하여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천장, 벽, 바닥)가 시공되지 않으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의 기본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고(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은 아파트 분양계약("모계약")에 부속하는 계약으로 모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공급가액	납부방법[납부시기]		
제조사	제품명	주택형(약식표기)	선택사항	설치대수	설치위치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4차중도금납부일)	잔금 (입주지정일)
삼성전자	DVM-HOME 무풍 1WAY	74	기본	2대	거실+침실1	3,600,000	360,000	720,000	2,520,000
			전체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00,000	600,000	1,200,000	4,200,000
		84A	기본	2대	거실+침실1	3,600,000	360,000	720,000	2,520,000
			전체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00,000	600,000	1,200,000	4,200,000
		84B	기본	2대	거실+침실1	3,600,000	360,000	720,000	2,520,000
			전체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00,000	600,000	1,200,000	4,200,000
		84C	기본	2대	거실+침실1	3,600,000	360,000	720,000	2,520,000
			전체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500,000	650,000	1,300,000	4,550,000
		109	기본	3대	거실+침실1+주방	4,900,000	490,000	980,000	3,430,000
			전체	5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	7,600,000	760,000	1,520,000	5,320,000
		117A, 117B, 117C	기본	3대	거실+침실1+주방	4,900,000	490,000	980,000	3,430,000
			전체	6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알파룸	9,000,000	900,000	1,800,000	6,300,000
		130	기본	3대	거실+침실1+주방	5,500,000	550,000	1,100,000	3,850,000
			전체	6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알파룸	9,000,000	900,000	1,800,000	6,300,000
		137A, 137B	기본	3대	거실+침실1+주방	4,900,000	490,000	980,000	3,430,000
			전체	6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주방	9,000,000	900,000	1,800,000	6,300,000
		143	기본	3대	거실+침실1+주방	4,800,000	480,000	960,000	3,360,000
			전체	8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주방+알파룸+가족실	11,800,000	1,180,000	2,360,000	8,260,000
		147	기본	3대	거실+침실1+주방	4,800,000	480,000	960,000	3,360,000
			전체	8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주방+알파룸+가족실	12,000,000	1,200,000	2,400,000	8,400,000
		148	기본	3대	거실+침실1+주방	4,900,000	490,000	980,000	3,430,000
			전체	8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주방+알파룸+가족실	11,800,000	1,180,000	2,360,000	8,260,000
		183	기본	3대	거실+침실1+주방	5,300,000	530,000	1,060,000	3,710,000
			전체	8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침실5+주방+가족실	12,600,000	1,260,000	2,520,000	8,820,000

2)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제조사	세부내역		주택형(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방법[납부시기]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4차중도금납부일)	잔금 (입주지정일)
인덕션	하츠	3구, 하츠 EIC-30NWP211		전 타입	780,000	78,000	156,000	546,000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삼성 DW80F71Y1SEW		전 타입	920,000	92,000	184,000	644,000
냉장고패키지	LG전자	[FIX & MAX 냉장고] 냉장고 - BA1L4AA 냉동고 - BC1F4AA 김치냉장고 - BC1K4AA 냉장고장	유리장식장 미포함	74	6,500,000	650,000	1,300,000	4,550,000
			유리장식장 포함	84A	6,700,000	670,000	1,340,000	4,690,000
				84B	6,700,000	670,000	1,340,000	4,690,000
				84C	7,000,000	700,000	1,400,000	4,900,000
				109	6,700,000	670,000	1,340,000	4,690,000
				117A, 117B, 117C	6,900,000	690,000	1,380,000	4,830,000
				130	6,900,000	690,000	1,380,000	4,830,000
				137A, 137B	6,700,000	670,000	1,340,000	4,690,000
				143	7,000,000	700,000	1,400,000	4,900,000
				147	7,000,000	700,000	1,400,000	4,900,000
				148	7,000,000	700,000	1,400,000	4,900,000
				183	7,000,000	700,000	1,400,000	4,900,000
환풍기 옵션	하츠	하츠 HMF-G700	2개소 (공용욕실, 부부욕실)	74	820,000	82,000	164,000	574,000
				84A	820,000	82,000	164,000	574,000
				84B	820,000	82,000	164,000	574,000
				84C	820,000	82,000	164,000	574,000
				109	820,000	82,000	164,000	574,000
				117A, 117B, 117C	820,000	82,000	164,000	574,000
				130	820,000	82,000	164,000	574,000
				137A, 137B	820,000	82,000	164,000	574,000
			3개소	143	1,230,000	123,000	246,000	861,000
				147	1,230,000	123,000	246,000	861,000
				148	1,230,000	123,000	246,000	861,000
			4개소	183	1,640,000	164,000	328,000	1,148,000
			※ 109타입의 경우 부부욕실 특화와 동시 선택시 부부욕실 환풍기는 미설치(공급금액의 50%감액)					
			※ 183타입의 경우 하부층 부부욕실 특화와 동시 선택시 하부층 부부욕실 환풍기는 미설치(공급금액의 50%감액)					
			※ 143/147/148타입의 3개소 설치위치는 하부층 공용욕실, 하부층 부부욕실, 상부층 부부욕실임					
			※ 1083타입의 4개소 설치위치는 하부층 공용욕실, 하부층 부부욕실, 상부층 공용욕실, 상부층 부부욕실임					

3) 인테리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세부내역	주택형(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방법[납부시기]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4차중도금납부일)	잔금 (입주지정일)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닝도어+가구판넬	74	1,640,000	164,000	328,000	1,148,000
		84A	1,600,000	160,000	320,000	1,120,000
		84B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84C	3,200,000	320,000	640,000	2,240,000
		109	1,700,000	170,000	340,000	1,190,000
		117A, 117B, 117C	2,700,000	270,000	540,000	1,890,000
		130	2,360,000	236,000	472,000	1,652,000
		137A, 137B	2,650,000	265,000	530,000	1,855,000
		143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147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148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183	1,960,000	196,000	392,000	1,372,000
발코니2 특화	보조주방패키지(상판 : 인조대리석(MMA))	84A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84B	1,420,000	142,000	284,000	994,000
		109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117A, 117B, 117C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130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137A, 137B	1,820,000	182,000	364,000	1,274,000
		143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147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148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183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74, 84C	선택불가			
주방마감재 특 화	주방(벽+상판)마감 엔지니어스톤+주방가구+독립형후드+사각싱크볼+고급수전	74	6,100,000	610,000	1,220,000	4,270,000
	주방(벽+상판)마감 엔지니어스톤+주방가구+벽체시트판넬+독립형후드+사각싱크볼+고급수전	84A	4,900,000	490,000	980,000	3,430,000
	아일랜드 식탁 옵션(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1,560,000	156,000	312,000	1,092,000

구분	세부내역	주택형(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방법[납부시기]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4차중도금납부일)	잔금 (입주지정일)
주방마감재 특 화	주방(벽+상판)마감 엔지니어스톤+주방가구+벽체시트판넬+독립형후드+사각싱크볼+고급수전	84B	6,100,000	610,000	1,220,000	4,270,000
	아일랜드 식탁 옵션(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주방(벽+상판)마감 엔지니어스톤+주방가구+벽체시트판넬+독립형후드+사각싱크볼+고급수전	84C	6,500,000	650,000	1,300,000	4,550,000
	주방(벽+상판)마감 엔지니어스톤+주방가구+홈바 유리 장식장+알파룸 시스템가구+독립형후드+사각싱크볼+고급수전	109	9,500,000	950,000	1,900,000	6,650,000
	주방(벽+상판)마감 엔지니어스톤+주방가구+벽체시트판넬+독립형후드+사각싱크볼+고급수전	117A, 117B, 117C	5,500,000	550,000	1,100,000	3,850,000
	아일랜드 식탁 옵션(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1,600,000	160,000	320,000	1,120,000
	주방(벽+상판)마감 엔지니어스톤+주방가구+홈바 유리 장식장+독립형 후드+사각싱크볼+고급수전	130	9,200,000	920,000	1,840,000	6,440,000
	주방(벽+상판)마감 엔지니어스톤+주방가구+홈바 유리 장식장+독립형 후드+사각싱크볼+고급수전	137A, 137B	8,300,000	830,000	1,660,000	5,810,000
	주방(벽+상판)마감 엔지니어스톤+주방가구+벽체시트판넬+독립형후드+사각싱크볼+고급수전	143	5,500,000	550,000	1,100,000	3,850,000
	아일랜드 식탁 옵션(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1,600,000	160,000	320,000	1,120,000
	주방(벽+상판)마감 엔지니어스톤+주방가구+벽체시트판넬+독립형후드+사각싱크볼+고급수전	147	5,500,000	550,000	1,100,000	3,850,000
	아일랜드 식탁 옵션(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1,600,000	160,000	320,000	1,120,000
	주방(벽+상판)마감 엔지니어스톤+주방가구+벽체시트판넬+독립형후드+사각싱크볼+고급수전	148	5,500,000	550,000	1,100,000	3,850,000
	아일랜드 식탁 옵션(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1,600,000	160,000	320,000	1,120,000
	주방(벽+상판)마감 엔지니어스톤+주방가구+홈바 유리 장식장+독립형 후드+사각싱크볼+고급수전	183	8,500,000	850,000	1,700,000	5,950,000
드레스룸 특화	※ 독립형 후드(하츠, 스퀘어 아일랜드(ISH-46S))					
	드레스룸(벽판넬형, 슬라이딩도어 포함), 드레스룸 제습기(제조사 : 코스텔, CDD-600B)	74	6,000,000	600,000	1,200,000	4,200,000
		84A	5,300,000	530,000	1,060,000	3,710,000
		84B	4,100,000	410,000	820,000	2,870,000
		109	3,600,000	360,000	720,000	2,520,000
		130	6,000,000	600,000	1,200,000	4,200,000
		137A, 137B	5,500,000	550,000	1,100,000	3,850,000
	드레스룸(벽판넬형), 드레스룸 제습기(제조사 상동)	84C	3,500,000	350,000	700,000	2,450,000
	침실1-드레스룸(벽판넬형, 슬라이딩도어 포함), 제습기설치(제조사 상동), 침실2(117A,C)-시스템가구설치,복도(117B)-시스템가구설치	117A, 117B, 117C	5,100,000	510,000	1,020,000	3,570,000

구분	세부내역	주택형(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방법[납부시기]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4차중도금납부일)	잔금 (입주지정일)
드레스룸 특화	드레스룸(벽판넬형, 슬라이딩도어 포함), 드레스룸 제습기(하부세대 기준, 1개소)(제조사 상동)	143	5,500,000	550,000	1,100,000	3,850,000
		147	5,450,000	545,000	1,090,000	3,815,000
		148	5,450,000	545,000	1,090,000	3,815,000
		183	5,200,000	520,000	1,040,000	3,640,000
아트월벽면 특화	거실, 복도(아트월 벽면 디자인월 마감(마감부위 확장)+복도벽체 가구판넬+히든도어(4개)+픽쳐레일몰딩)	74	6,600,000	660,000	1,320,000	4,620,000
		84A	6,700,000	670,000	1,340,000	4,690,000
		84B	6,700,000	670,000	1,340,000	4,690,000
		109	6,900,000	690,000	1,380,000	4,830,000
	거실, 복도(아트월 벽면 디자인월 마감(마감부위 확장)+복도벽체 가구판넬+히든도어(4개)+시트판넬+픽쳐레일몰딩)	84C	7,000,000	700,000	1,400,000	4,900,000
	거실, 복도(아트월 벽면 디자인월 마감(마감부위 확장)+복도벽체 가구판넬+히든도어(5개)+픽쳐레일몰딩)	117A, 117B, 117C	8,000,000	800,000	1,600,000	5,600,000
		130	8,800,000	880,000	1,760,000	6,160,000
	거실, 복도(아트월 벽면 디자인월 마감(마감부위 확장)+복도벽체 가구판넬+히든도어(5개)+시트판넬(137A)+픽쳐레일몰딩)	137A, 137B	8,800,000	880,000	1,760,000	6,160,000
	거실, 복도(아트월 벽면 디자인월 마감(마감부위 확장)+복도벽체 가구판넬+히든도어(4개)+픽쳐레일몰딩)	143	6,500,000	650,000	1,300,000	4,550,000
		147	6,600,000	660,000	1,320,000	4,620,000
		148	6,600,000	660,000	1,320,000	4,620,000
		183	6,700,000	670,000	1,340,000	4,690,000
침실2 가구 특화	불박이장설치	74	1,140,000	114,000	228,000	798,000
		84A	1,240,000	124,000	248,000	868,000
		84B	1,280,000	128,000	256,000	896,000
		84C	1,240,000	124,000	248,000	868,000
		109	1,520,000	152,000	304,000	1,064,000
	불박이장설치(침실3)	117A, 117B, 117C	1,150,000	115,000	230,000	805,000
	불박이장설치	130	1,460,000	146,000	292,000	1,022,000
	불박이장설치(137A-침실2, 137B-침실3)	137A, 137B	1,240,000	124,000	248,000	868,000
	불박이장설치	143	1,240,000	124,000	248,000	868,000
		147	1,600,000	160,000	320,000	1,120,000
		148	1,600,000	160,000	320,000	1,120,000
		183	1,500,000	150,000	300,000	1,050,000

구분	세부내역	주택형(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방법[납부시기]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4차중도금납부일)	잔금 (입주지정일)
부부욕실 특화	욕실 패키지 옵션, 비데 일체형양변기(계림㈜, BC216J)	109	7,670,000	767,000	1,534,000	5,369,000
	욕실 패키지 옵션, 비데 일체형양변기(계림㈜, BC216J)	183	7,700,000	770,000	1,540,000	5,390,000
조명 특화	거실 리니어조명+주방고급 라인조명+고급형 디밍전자식 스위치[거실, 방]	74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84A	1,500,000	150,000	300,000	1,050,000
		84B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84C	1,340,000	134,000	268,000	938,000
		117A, 117B, 117C	1,650,000	165,000	330,000	1,155,000
		130	2,100,000	210,000	420,000	1,470,000
	거실 리니어조명+주방고급 라인조명+식탁옵션 리니어조명+고급형 디밍전자식 스위치[거실, 식탁옵션, 방]	109	2,870,000	287,000	574,000	2,009,000
		137A, 137B	3,200,000	320,000	640,000	2,240,000
	거실 리니어조명+주방고급 라인조명+고급형 디밍전자식 스위치[거실, 방]	143	2,400,000	240,000	480,000	1,680,000
		147	2,200,000	220,000	440,000	1,540,000
		148	2,200,000	220,000	440,000	1,540,000
	거실 리니어조명+주방고급 라인조명+식탁옵션 리니어조명+고급형 디밍전자식 스위치[거실, 식탁옵션, 방]	183	3,600,000	360,000	720,000	2,52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택품목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이후에는 계약해제 변경시 원상복구,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제공인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건본주택 설치품과 달리,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각실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건본주택에서 확인 필요)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전원 및 드레인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 및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실외기(각 실내기 소요 용량 합산, 조합률을 고려하여 제조사가 보증한 범위 내에 적합한 사양으로 설치)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진동이 발생하고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옵션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미 선택시 스탠드형 및 벽걸이용 벽체 매립 냉매 배관은 시공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단,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품목인 일반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침실1, 거실용 에어컨 냉매배관박스는 플라스틱 마감커버로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박스 위치 및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타입별 면적에 따른 용량 차이로 인하여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 응축수 배수를 위하여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드레인이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가전기기

-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빌트인 냉장고는 유상옵션 사항이며, 타입별로 냉장고장 형태 및 규격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옵션 미선택시 기본냉장고장치가 설치되며,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시)설치 시 제품 사양에 따라 벽면에서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주방가전(인덕션)

- ① 인덕션 옵션 미선택시 가스3구 쿡탑이 시공됩니다.
- ② 인덕션 옵션의 공급가격은 미선택 시 기본제공되는 가스3구 쿡탑과 가스공급설비 설치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③ 인덕션 전원연결을 위하여 제품 뒤쪽 주방벽면에 전용콘센트가 설치되어 연결되며, 이를 분리하여 멀티탭이나 다른 기기와 병행하거나 전원코드를 연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되오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④ 인덕션 옵션 선택시 가스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⑤ 인덕션 옵션 미선택시 추후 시공을 고려한 전기콘센트 및 전기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방가전(식기세척기)

- ① 식기세척기 선택 시 제품 전면부에 주방 가구마감과 동일한 색상의 판넬이 부착되며 가전제품 특성상 손잡이 부분은 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식기세척기 사용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부의 습기로 인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 후 건조하여야 합니다.
- ③ 식기세척기 미선택시 여닫이 장이 설치됩니다.
- ④ 일부식기는 고온세척 시 손상될 수 있으며, 내열온도가 낮은 플라스틱, 실리콘 용기는 변형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⑤ 식기세척기 사용 시 반드시 식기세척기 전용세제 및 전용 린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주방세제 사용 시 건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⑥ 식기세척기 전원연결을 위하여 제품 뒤쪽 주방벽면에 전용콘센트가 설치되어 연결되며, 이를 분리하여 멀티탭이나 다른 기기와 병행하거나 전원코드를 연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되오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⑦ 식기세척기 미선택시 추후 시공을 고려한 전기콘센트 및 전기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방가전(냉장고패키지)

- ① LG빌트인 냉장고의 배치순서, 문열림 방향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LG빌트인 냉장고의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동등이상의 대체 모델(타사 제품 포함)이 설치됩니다.
- ③ 판매되는 LG빌트인 냉장고 제품은 B2B 전용 모델입니다.
- ④ LG빌트인 냉장고의 공급금액에는 냉장고장 옵션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⑤ 냉장고패키지옵션 미선택시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며, 일반냉장고 설치시 냉장고장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 ⑥ 주방마감재특화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냉장고장 수납장은 유리문으로 설치되며 내부조명도 같이 설치 됩니다.(109TYPE)

● 환풍기특화

- ① 환풍기특화 옵션 금액은 기본제공되는 환풍기금액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 ② 환풍기특화 옵션 미선택시, 일반형 환풍기로 설치됩니다.
- ③ 환풍기특화 옵션 상품중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되는 아이템의 경우 동등이상(타사포함)의 대체 모델로 설치됩니다.
- ④ 환풍기특화 옵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가구/마감재/조명) 옵션

-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유무에 따라 천장 몰딩 및 가구의 형태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불박이 가구로 가려지는 벽, 천장, 바닥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타일의 사이즈 및 나누기는 기본제공 되는 타일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현관중문

- 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도어입니다.
- ② 현관중문 계약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현관중문의 유리는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④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⑤ 본 공사시 중문의 형태, 시공디테일, 적용 하드웨어, 유리디자인은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⑥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 중문을 시공으로 인하여 현관디딤돌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⑦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중문틀은 시공되지 않으며, 팬트리쪽 벽체마감은 기존의 벽지, 걸레받이로 마감됩니다.
- ⑧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 평형별로 사양, 규격이 다를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2특화

- ① 발코니2특화 옵션시 기존 2단세탁선반은 미설치되며 그 자리에 보조주방가구가 설치됩니다.
- ② 보조주방가구 상판은 MMA입니다.
- ③ 발코니2특화 옵션 미선택시 2단세탁선반이 설치되며, 일반벽체에 도장으로 마감됩니다.
- ④ 발코니2특화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가구의 크기 및 형태는 각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마감재특화

- ① 주방마감재특화 옵션은 주방마감내역에 포함된 전체 아이টে을 기준으로합니다.
- ② 주방마감재특화 옵션 계약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주방마감재특화 옵션 미선택시 가구는 기본가구, 벽체는 일반타일, 상판은 MMA, 침니형후드, 벽체는 도배, 걸레받이로 마감됩니다.
- ④ 옵션금액은 기본마감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⑤ 주방마감재특화의 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시 마감제품이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동등이상의 마감재로 변경시공됩니다.
- ⑥ 주방마감재특화 옵션 선택시 홈바장식장이 설치되며 팬트리내부에 시스템가구도 설치됩니다. 옵션 미선택시 팬트리의 시스템가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109TYPE)
- ⑦ 주방마감재특화 옵션 선택시 측면키큰장에 유리도어가 설치됩니다.(84B)
- ⑧ 주방마감재특화 옵션 중 아일랜드옵션 선택시에만 아일랜드장 앞으로 식탁이 설치됩니다.(84B)
- ⑨ 주방상판마감 및 벽체 마감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나누기 및 디자인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특화

- ① 드레스룸특화 옵션은 드레스룸마감내역에 포함된 전체 아이টে을 기준으로합니다.
- ② 드레스룸특화 옵션 계약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드레스룸특화 옵션 미선택시 파우더룸, 드레스룸은 분리되어 시공되며, 드레스룸 가구는 일반 시스템가구로 시공되며, 슬라이딩도어는 드레스룸도어로 변경되어 시공되며, 제습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④ 옵션금액은 기본마감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⑤ 입주시 마감제품이 제조사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동등이상의 마감재로 변경시공됩니다.
- ⑥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⑦ 드레스룸 옵션시 설치되는 조명은 유지보수를 위해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⑧ 드레스룸특화 옵션시 복층형 세대(143,147,148,183TYPE) 제습기 설치는 하부세대 드레스룸(1개소)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아트월벽면특화

- ① 아트월벽면특화 옵션은 거실벽면부터 복도쪽 침실2,3, 욕실 입구벽면까지 시공됩니다.
- ② 아트월벽면특화 옵션 미선택시 아트월벽면은 타일, 나머지 벽면은 도배, 걸레받이로 시공되며, 방문은 일반 목문으로 설치됩니다.
- ③ 픽처레일몰딩은 침실2,3사이, 거실벽면쪽에만 시공됩니다.
- ④ 아트월벽면특화 옵션 선택시 히트도어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고급형 하드웨어가 사용되며, 옵션 미선택시 하드웨어는 일반하드웨어로 시공됩니다.
- ⑤ 옵션금액은 기본마감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⑥ 타입 및 평면 옵션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침실2 가구특화(117A,B,C, 137B TYPE은 침실3)

- ① 침실2가구특화 옵션 금액은 기본제공되는 벽지, 걸레받이등 금액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 ② 침실2가구특화 옵션 미선택시 기존 벽지, 걸레받이가 설치됩니다.
- ③ 침실2가구특화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가구의 크기는 각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부욕실특화(109, 183TYPE 적용)

- ① 부부욕실특화 옵션 금액은 기본제공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② 부부욕실특화 옵션 선택시 화장대상판 마감도 욕실과 같은 재질로 변경됩니다.
- ③ 부부욕실특화 옵션 상품중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되는 아이템의 경우 동등이상의 대체 모델로 설치됩니다.
- ④ 부부욕실특화 옵션 미선택시 기본 부부욕실로 시공됩니다.
- ⑤ 부부욕실특화 계약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⑥ 부부욕실특화 옵션 선택시 욕실장은 매립형으로 설치됩니다.
- ⑦ 부부욕실특화 옵션 선택시 출입문은 포켓도어로 설치되며 기존 설치되었던 여닫이 문과 바닥 디딤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⑧ 부부욕실특화 옵션 선택시 천장마감이 변경됩니다.
- ⑨ 부부욕실특화 옵션 선택시 기존욕조대신 월풀욕조가 설치되며, 바닥, 벽체 마감자재또한 변경됩니다.
- ⑩ 부부욕실특화 옵션 선택시 벽/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⑪ 욕실가구의 제조사, 색상, 규격, 형태 등 상세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명특화

- ① 조명특화 옵션 금액은 기본제공되는 조명금액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 ② 조명특화 옵션 미선택시, 디밍기능이 없는 일반형 조명과 일반형 전자식 네트워크 스위치로 설치됩니다.
- ③ 조명특화 옵션 선택시, 거실등(고급리니어형), 주방등(고급 라인매입형), 식탁옵션등(고급리니어형/109, 137A, 137B, 183 TYPE에 한함)이 설치되고, 또한 디밍 기능이 있는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가 거실리니어조명, 식탁옵션리니어조명(109, 137A, 137B, 183TYPE에 한함), 방등에 적용되어 설치 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유상옵션 대금	KB국민은행	205701-04-354075	금강종합건설(주)

- 견본주택 내에서 추가 선택금액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지정 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및 발코니 확장 입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추가 선택 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일정 및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현관중문은 주택형에 따라 크기와 열림방향, 열림순서가 다르게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타일 옵션 미선택시, 기본 거실 아트월 마감은 600*1200각 타일, 복도벽체는 벽지마감으로 설치됩니다.
 - 안방 드레스룸 특화형 미선택시, 기본구성은 파우더+일반 드레스룸으로 설치되며, 드레스룸 내에는 일반 시스템선반으로 가구 구성 및 디자인이 변경 설치됩니다. (조명 및 벽체 판넬마감, 슬라이딩도어 미설치)
 - 발코니 비확장시, 파우더+일반드레스룸은 별도의 가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가구 업스타일링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플랩상부장+독립형후드+확장아일랜드+고급주방액세서리) 에 따라 주방가구의 수납 구성, 수납장의 크기, 가구 디자인 및 디테일 등이 변경됩니다.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미선택시 주방벽체 기본마감은 타일(300*600각), 주방상판 기본마감은 MMA(인조대리석)이며, 주방 마감재 옵션에 따라 상판의 두께 및 가구 디테일 등이 변경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추가 선택품목의 상품구성, 적용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타입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공사 시작 이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11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및 유의사항
 - ※ 입주 예정일 : 2029년 03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원자재 파동,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전용 및 공용)에 대해서는 잔금납부, 열쇠인수, 이사, 소유권이전 및 고지서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열쇠인수일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인수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 대출로 전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소방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자)건축사사무소 태백	(주)에이치앤에이	(주)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1,743,817,900-	₩52,800,000-	₩671,000,000-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구 분	내진능력(MMI 등급)
내진등급 I	VII-0.17g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 능력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 시공 시 현장여건, 전기, 설비, 구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상1층 : 6.0m 이상 지하1층 : 6.0m 이상	지상1층 : 4.5m 이상 지하1층 : 2.7m 이상	지상1층 : 4.5m 이상 지하1층 : 2.7m 이상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 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 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 주체		시공사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상 호	(주)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 지음	금강종합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1258220	140111-0079035	110111-1273137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강원도 춘천시 효석로 5, 201호(효자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44, 503호 (죽전동, 우곡프라자)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6-101-0002500호	₩91,866,45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형(차입형)토지신탁 주요사항

- 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주)지음이 시행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25.04.23. 분양형토지신탁계약 체결)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자인 (주)지음이고, 금강종합건설(주)은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다하며, (주)한국토지신탁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시행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주)한국토지신탁이 지정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시공사 금강종합건설(주)이 책임지며, 수분양자는 (주)한국토지신탁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지음과 시행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행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지음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주)한국토지신탁은 중도금대출 알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분양계약자는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공급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따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 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요사항의 각 내용은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항

※ 부동산개발업자 : (주)한국토지신탁, 서울시 080010호 ※ 주영업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 인허가 사항 : 고성군 2023-허가민원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공급대상물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청간리 1번지 일원 ※ 지목(대표) : 전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한보호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2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규모 : 지하 1층~지상 29층 / 아파트 3개동 ※ 2026년 02월 6일 착공신고필증 교부 ※ 2029년 03월 준공 예정 ※ 대지면적 : 14,210.0000㎡ ※ 건축주

검 신탁업자 : ㈜한국토지신탁 ※ 분양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시공사 : 금강종합건설㈜ ※ 위탁사 : ㈜지음 ※ 분양대행 : ㈜동인위즈 ※ 분양대금관리방법 : 신탁사 자금관리(분양형 토지신탁)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지소유권 :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 시 개별 소유권이전등기 ※ 본 공고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건축허가 변경 여부,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지 인근 교통시설과 주변환경 및 개발 계획 등은 해당기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12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 본 공고문에 미기재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건축법」및「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에 따라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환경(혐오시설 위치, 도로, 소음, 일조, 조망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며, 유의 사항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의 각종 인쇄물 상의 조감도, 투시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입면 디자인[저층부 석재, 줄눈, 도장 디자인, 입면 디자인 (BI/CI, 상부층 장식 요소 등)], 각종 시설물(조경, 창호, 필로티, 외부 계단 등), 동선 체계 등이 시행 주체, 시공중 오류 사항 보완 및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 조경 공사, 주변 시설 공사 등으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의 생활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표시 방법은 m²으로 표기되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됩니다.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절삭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물딩,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D.A, 옥외 설치물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습니다. 단지 구조상 세대 입주 시 사다리차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입주 전 이사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창호의 개구부 규격이 작고, 유리난간설치로 인해 이삿짐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형 가전, 가구, 피아노 등의 설치에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므로 이사, 이전설치 및 구매설치 시 세대반입, 반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투시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 등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현장답사 등 사전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과 CG, 모형, 도면에 명기되는 면적, 치수 등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사업 부지면적 등은 법령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주민공동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경계 및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단, 소수점 이하 변경에 대하여는 상호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단지 내 대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주민공동시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되, 위치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세대별 면적분할이나 위치지정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아파트의 마감사양, 주민공동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주민공동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에 대한 금원 확보와 금액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예정) •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등의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 및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로교통소음 예측평가결과에 따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실내소음도 기준을 만족하며, 추후 소음이 법적 기준 초과 시 그에 따른 방음시설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 세대 등의 경우 이로 인해 조망 및 일조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및 인접 건물 등의 영향으로 일부 세대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총 일조 확보 시간이 관련 수인한도(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일조 환경 반영하여 분양가를 차등 적용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수분양자는 견본주택 내 전시된 단지모형과 일조권, 조망권 침해관련 현장설명, 견본주택에 비치된 자료를 직접열람하고 설계도서 등을 통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제기,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84B, 109 타입 총 2개의 유니트가 설치되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CG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 전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영상, 이미지 등 시각자료, 모형, 홍보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유니트 (84B, 109타입)에 상영되는 CG, 영상, 이미지 등 시각자료는 주변 현황(바다, 산)의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홍보물로서 실제 풍경, 거리, 색채 등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모형의 단지 경계 외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정확한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준공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모형의 단지 경계 내 바닥 표현은 모형의 스케일에 따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본 시공 시 패턴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관련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본 공사 제외 품목이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 보수 시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 법규에 의거 그 개수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 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옵션의 선택 유무, 발코니의 확장여부 등에 따라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옵션 선택의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 거실, 욕실, 발코니 등 바닥 및 벽, 천장의 타일(마감재)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 몰딩의 유무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등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 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인조대리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코너, 마감재 접합부, 패턴 등은 실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정 또는 교체 공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 공간이 협소하거나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가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입주 시 실측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등은 선택하신 제품과 동일 제품으로 설치가 되며 제품의 단종,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전 당 현장 설치를 위해 생산되는 동일 사양 제품으로, 재고 제품을 설치 하는 것은 아니며 입주전 최신형 제품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동일하며, 설치 공간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펙스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소방 설비, 제조업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은 침실벽, 팬트리 또는 현관창고 내부에 매입설치(커버 노출)되며, 아울러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해 전기분전함은 침실벽에 매입설치(커버 노출)됩니다.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함 설치에 따라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고 가구 배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관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설치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설치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월패드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 배치, 평면 배치, 기타 품목 시공 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할 경우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성 여부,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공사 커튼 박스 시공 시 간섭 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장 하부 및 팬트리 또는 다용도실, 드레스룸, 침실 수납공간 등에는 온수 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각 부위별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수분배기 설치부위와 주방가구가 설치되는 바닥 등에는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가구, 가전, 마감재, 조명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선반의 하드웨어는 본납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렌지 후드, 환기 덕트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구 인덕션 선택시 가스배관은 보일러까지 설치되며 세대 내부로 인입되지 않고 화구는 3구 인덕션으로 대체 설치 됩니다. 주방에 가스배관이 연결되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의 CG, 영상, 이미지 등 시각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 촬영 또는 가상으로 구현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의 CG, 영상, 이미지 등 시각자료에 표현된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 문제이며,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 가전류, 침장 및 커튼류, 전시 조명 등은 연출을 위한 전시 품목이므로 본 공사 시 관련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설치하지 않습니다.
--	--	--

		• 건본주택 내 설치 및 홍보물(팜플렛, 분양 카달로그 등) 등에 삽입된 커뮤니티 시설 이미지는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의 변경, 개발 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가구, 운동기구 등은 설치 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커뮤니티 시설 이미지는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 또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 등의 문제로 부득이한 경우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실 시공 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 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동등성능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창호 외부에 LED 전광판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된 참고용 이미지며, 실제 조망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관련	• 홈페이지 및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현된 CG(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등)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단지 내조경계획, 시설계획, 놀이터 계획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서 대비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광고 홍보물 등 CG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 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 색채, 외벽 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예정 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관련 사항 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이 확인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제시된 CG,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건본주택 내 사인물 등에 표현된 계획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시설 등은 향후 각종 심의, 실시 계획인가 등의 인·허가 결과, 준공 전 인허가청의 요구사항, 현장 여건, 설계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세부계획(건물의 형태 및 배치, 출입구 및 통행로,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02. 사업계획승인 변경 도면 기준으로 하되, 그 외에 사업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건 공동주택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각 사업주체, 지자체, 기관이 각자 그 역할을 나누어 계획하고 설치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자연재해,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및 정부의 정책에 의해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건축한계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최종 측량 결과 및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내부 도로 및 조경계획은 차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이나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설계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도면 이외 사항을 요청하실 경우, 사업 주체의 수락하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사업주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제시된 내용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예율, 용적률, 주차대수, 조경 면적, 공용면적 등은 법적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 특화 및 마감 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 여건·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지면적, 대지 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이 최종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 하여야 합니다. •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기능·상품개선 등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성군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 도서, 분양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대체구거, 옹벽, 차량진입부 차로 및 보도 등 도시기반시설 중 영구점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점용비용 및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차량 진출입부의 가감차로, 보도 등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상권 설정이 필요한 구간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관련 기관의 인허가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 세대 테라스는 공용부분으로서 전용세대의 배타적 사용이 허용되나, 임의변경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유지관리 시 공용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 규약과 관리주체 결의 등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사업주체의 책무범위가 아닙니다. - 공급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이 이루어집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영구배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따른 하(우)수도 사용료 등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마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안등, 문주조명, 가로등, 조경조명, 지붕조명 등 경관조명에 따라 인접세대 내부에 빛공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구조상 세대 입주 시 사다리차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입주 전 이사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홈오��메이션) 시스템은 본공사 시 설계변경 등으로 기능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차장은 인접 구조물과 설비로 인해 차량 승하차 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도면상 안목치수는 타일, 가구 등 마감재 두께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입주 시 실제 측정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변현황	- 사업부지 남동측에 12M, 20M 도로(중로3-7)와 청간해변이 인접하여 있어 소음 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서측에 6~8m(소로2-54)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소음 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와 사업부지 동측에 전신주가 위치하여 조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신주의 지중화 및 이설은 불가능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확인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동측에 펜션 등 건물 등이 인접하여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소음 등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7번국도와 인접하여 소음등 환경피해(소음, 진동, 분진 등)가있을 수 있으며, 주말 및 행락철기간의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련기관 등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남동측에 중계 펌프장이 존재, 사업부지 북동측에는 농촌과 농가가 위치하고 있어 악취, 벌레 발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계펌프장과 단지에 사이에는 방음벽이 설치되며, 돌풍 위치 및 풍향강도 등에 따라 높이가 변동 될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남동측의 중계 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탈취기는 본 아파트단지 관리단에서 주기적으로 개선(오버홀) 작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남서측에는 유진클래시움 공동주택단지가 위치해 있고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정문(근린생활시설)에는 전신주와 전선으로 인해 조망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에 의해 소음·빛 공해·분진·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 식재 및 조경 시설물,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 통행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급·배기 시설(DA), 실외기실, 공용 시설물 등). - 모형도 및 CG에 표현된 부분은 계획안이며 당사 건축물 준공 시점에 실제와 상이하거나 일부 미완료될 수 있습니다. - 차후 주변 신축·개발로 인해 각 동의 층·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주체와 관련 없는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CG 상의 조감도, 배치도 및 단지 모형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해안가에 인접하여 해풍 및 염분노출로 인한 자재의 부식이나 오염이 일반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유지관리 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동남측에 총 2개의 전신주가 설치 되어 있으며, 2개 전신주가 추가되어 총 4개의 전신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 위치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전력공사의 검토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조망·경관·생활환경 등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	• 본 단지의 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아야진초등학교, 전진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하고, 중학교는 동광중학교, 고등학교는 고성 전역에 배치 예정입니다. •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개발사업 및 학생 발생 추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교육시설의 학생통학구역 및 학교군, 배정방법 등은 매년 설정 및 고시되며, 향후 학생배치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외부	공통	•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최종사업승인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스정압기 및 한전 전기공급시설이 단지내 외각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설치 위치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미정임) • 주차구획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공동주택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서,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 혹은 외부인 출입 등으로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설비의 패널은 옥상 또는 옥탑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구조물(태양광패널, 옥상구조물 등)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 세대는 빛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보행자 및 차량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일조·조망·사생활 침해·빛 공해·분진·냄새·진동 등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 지분은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산정되어 있으나,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지의 측량 결과·관련 법규변경·인허가 변경·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 동호수별 위치, 단지 단차에 따른 옹벽의 종류,형태, 위치, 드라이에어리어, 방음벽, 웬스,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주택형 계약 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및 장애인 램프 등의 시설물의 형태 및 배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저층부는 일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층세대는 일조수인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승인시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인접부지의 일부 담장 및 구조물등이 단지 조경내로 침범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단지 내 차로 등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령 및 지자체 소음관련 기준 미달 시 단지내·외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하는 외부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 시설물은 운영 방식에 따라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기부채납시설로 본 단지 입주민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동측 보행로(도시계획도로(소로 청간2-1, 8m))는 아파트단지의 전유부분이 아니며, 준공 후 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주체는 본 단지이나 공용 보도의 사용을 제한하는 웬스 등을 설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조경시설(수경시설)은 수영장이 아니므로, 수경시설내 진출입이 불가합니다. • 단지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에 따라 동절기 폭설시 결로방지 등을 위해 유지관리 보수하여야 합니다. • 주동 저층부(PIT~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뿔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며,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 안테나, 피뢰침, 단지 사인물, 경관조명, 태양광패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설치 면적 및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러한 시설물로 인한 소음·진동·빛 공해·조망권 제한 등의 생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관 개선을 위해 일부 동의 캐노피가 벽면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필로티·기둥 위치 등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2조에 작성된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모든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및 부대시설(펌프실, 전기실 등)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 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합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등 단지 내 시설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현재 배치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장소인 휴게공간 및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설치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크기 및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에 의해 단지 내·외 도로, 기부채납 시설, 부대·복리시설(경로당 등의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시설) 등의 선형, 크기, 위치,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미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저층부,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가까운 세대, 비상도로 및 보행로로부터 가까운 저층부 세대,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 등)의 경우 일조·조망·사생활 침해·빛 공해·분진·냄새·진동 등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지하(지상)주차장 출입구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및 빛 공해, 펌프실, 전기실, 제연휀룸, 환기 드라이에어리어 등에 따른 소음 및 냄새·진동, 의장용 구조물, 위성 안테나, 쓰레기 보관소, 재활용 보관소, 공용부 실외기실 등) •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산벽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에는 D.A 및 천창이 설치되며 배치도상에 표현된 D.A 및 천창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등 저층부 세대와 단지내 보행로에는 D.A시설물이 설치로 소음 및 진동, 바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확장발코니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설계되고, 세대 내부실 간 벽은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 벽체로 시공됩니다. 이때 실간 소음 및 층간소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의 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각의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소방차용 부서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니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전체 높이는 공사 여건 및 시공 방법, 피난층, 공법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 등의 공용부는 채광, 환기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시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택형별 단위세대에는 전용면적에 발코니 초과 면적이 포함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다소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동 호수별 위치, 주변 건물 등에 따라 일조, 조망, 기타 주거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관계기관 심의 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입주 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입주민은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편의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분양 계약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 엘리베이터 내부 디자인은 르네오션 고성 퍼스트뷰 디자인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에 포함 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휴막이가시설, 지하층의 구조, 기초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세대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세대에 대해서는 품질점검 등의 용도사용 이후 샘플하우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단지 남서측에 면한 8M 도로에서 연결되는 부출입구의 운영 및 외부인 출입에 대한 보안, 유지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남동측에 면한 청간해변과 연결되는 보행자 출입구의 운영 및 외부인 출입에 대한 보안, 유지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는 지역적 특성상 청간해변에 인접하여 창호개방 후 세대 이용시 다습한 환경에 의해 마감재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지속적인 환기 및 제습을 통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리 부실로 인한 마감재 손상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체와 기전설비는 정밀구조, 소요량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고 설비사양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 및 지하, 지상층 구조와 형식, 규격, 수량 등은 굴토 후 지반층상태 및 지내력시험, 최적화 설계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천장, 벽면은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의 배관, 배선이 설치되며 부위별로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있습니다. • 101동 북서측에 인접건물(유진클래시움)의 옹벽 등 일부 구조물이 당 현장 단지 경계 내로 침범되어 있으며, 해당 구조물은 존치된 상태로 준공 될 수 있습니다. • 102동 남서측에 인접건물(유진클래시움)의 보강토 옹벽 등 일부 구조물이 당 현장 단지에 침범되어 있으며, 해당 구조물은 존치된 상태로 준공 될 수 있습니다.
조경 및 주민공동시설	• 공동 시설물(주민공동시설, 조경, 단지 내부 도로 등) 및 동측 보행로(토성 도시계획도로(소 청간2-1))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 공동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준공 이후 조경관련 유지, 보수, 관리의 시행 주체는 입주인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인수인계시 드리는 유지관리계획서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전, 후면에 소방법상 소방차용 부서공간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해당 구간에 시설물,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가로 경관, 시설물 위치, 형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용 부서공간은 준공시 변경 가능하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단지 내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는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으로 설치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및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환기 환룸, 제연 환룸 등)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위성 안테나, 통신설비, 태양광패널 등),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으로 인해 일조, 조망, 소음, 빛 공해, 분진, 냄새,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조경 등은 현장 실 시공 단계에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 및 배치는 모형 및 분양 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조경 시설물, 공동 출입문, 세대 출입구 등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재질·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경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되며 입주 후 입주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적 마감 이외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비품 등)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입면 디자인, 마감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사업계획의 변경, 개발 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실내 가구, 운동시설 등은 설치 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용역원실,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공 시 일부 규모 및 위치, 개소 등이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디자인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계획은 사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부대시설의 위치와 배치계획 상 각 동별로 지상, 지하 동선 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부대 및 복리시설에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시설물(주민공동시설, 조경, 단지 내부 도로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동선, 입면 디자인 마감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주변에는 주민공동시설 실외기가 배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분진, 진동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측면에 지상주차장과 연결되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있어 소음 및 조망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간변과 연결되는 출입구는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차량 동선으로 일상시에는 볼라드 등을 통해 차량 통행제한 예정인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방법 관리 시스템 중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은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방범용 CCTV는 주차장, 단지 출입구, 놀이터 등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최종 전파측정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1동~103동 엘리베이터는 비상용, 장애인용 공용으로 분당 120m(단, 102동 1호기는 105m) 운행하는 기종으로 에어컨이 설치되며 DID, 방화도어는 미설치 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공기청정기 사용시 공동전기요금 발생되며 필터 교체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 사양은 층별로 마감 사양이 다르게 시공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동별로 형태가 상이하여 채광창이 없을 수 있으며, 채광창 창호의 유무 및 창호 크기,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본 공사 시 법적 기준 내 제조사의 제품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PD, EPS, TPS실 등 각 실 내측 조적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공되며 철판 내측 마감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관리에 따라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 규모는 법적 기준 내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본 단지의 설치예정 주차대수는 369대(근린생활시설 7대 포함)이며, 다만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위치, 개소, 크기 등)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 혹은 변경되거나 공간계획 및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시스템 및 엘리베이터 홀에 제습기 설치 시 및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옥외도출시설물(DA)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 지상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냄새, 소음 및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 19개소[급속 2대, 완속 17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전기 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계획 변경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계관련 주요사항		•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용도별·동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정 주차구획 운영·통제는 관리주체 책임입니다. • 주차장과 공용부 통로공간, 계단실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지상주차장 보행 진입을 위해서는 102동 103동 측면의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지하주차장에서 각 주동 출입구의 연결 계획이 상이하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출입구 출입램프 구조물, 단지 내 보안등 문주조명 등 경관조명으로 인한 시야간섭 및 눈부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택배차 이용 층수는 지상 1층으로 설계되었으며,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그 외 층수는 택배차 이용이 불가함으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성능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공사 시 구조, 동선, 디자인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되며 설비 작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며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차단기(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는 단지 주출입구 우측에 위치하고 어린이버스 승하차장은 단지 중앙 원형교차로 우측에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과 공용으로 출입을 하도록 계획되어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주차장 사용 가능 층수 및 주차대수는 층마다 상이하며 생활의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시설의 계획을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 및 지하주차장 차량통행로의 유효높이는 지상1층 4.5m이상, 지하1층 2.7m이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 시공시 유효 천장고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장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 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은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구간은 실외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일부에는 주방환기설비,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장비의 수증기, 소음, 분진, 진동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주출입구 좌측에 별동으로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본동 지하주차장 및 각동별 주동출입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 별 유의 사항	101 동 • 101동 1층에는 경비실 및 방재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면한 위층세대와 옆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전면에는 단지 주출입구연결도는 단지내 도로가 위치하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후면에는 야외 조경시설(수경시설등)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매연 및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 2호라인 후면에는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 2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101동 2호라인 필로티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북서측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남동측면에 문주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조망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2호라인 남측면에 중계펌프장이 있어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남측에 지상주차장(노외주차장)이 있어 차량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 동 • 102동 전면에 문주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냄새,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분진, 진동, 저층부 세대간섭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 남동면에는 어린이놀이터와 조경시설이 계획, 북동측면, 남서측면에 광장(정원)이 계획 되며 이에 따라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2호, 3호 라인 2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 질 수 있습니다.

			• 102동 남서측에 단지 주출입구와 이어지는 주차출입구가 위치하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4호 세대 지상1층 후면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3호세대 측면에 지상주차장과 연결되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있어 소음 및 조망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2동 1,4호 라인 후면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137A타입세대의 측면 테라스는 공용부위이므로 공용설비 또는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진입 요구시 반드시 개발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소유권 등 재산권 행사와 구조·마감재 등의 변경 및 이동불가능한 구조물·시설물 추가 설치등은 절대 불가함을 확인하고 이에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103동	• 103동 남동측에는 부대복리시설(경로당, 피트니스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6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 질수 있습니다. • 103동 6호 라인 측면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며 이에 따라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3,4호라인 1층에는 쓰레기분리수거함과 주차장이 있어 이로 의해 일부 세대에 냄새, 소음(자동차 엔진 소음 등),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북동측면에 주차램프가 있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6호세대 측면에 지상주차장과 연결되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있어 소음 및 조망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17A, 117B타입의 테라스에는 외부에 별도의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투시형 난간 설치) • 103동 117B타입세대의 측면 테라스는 공용부위이므로 공용설비 또는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진입 요구시 반드시 개발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소유권 등 재산권 행사와 구조·마감재 등의 변경 및 이동불가능한 구조물·시설물 추가 설치등은 절대 불가함을 확인하고 이에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위 세대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팸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천장, 벽, 바닥 등)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과 창호 개폐 방향이 좌우대칭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는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 면적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는 잔디마당,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최하층세대 제외)에 따라, 해당 피난구 주변에는 가구나 집기 등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별도 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해당 관청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평면	• 주택형의 기본 천장고는 2.3m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0, 137A, 137B, 183타입의 경우 천장고가 2.4m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세대는 높이의 차이로 인한 마감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가구와 천장 사이에 간격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각 실 위치의 출입문 폭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의 폭·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레인지 후드 상부 장에는 소방 법규에 맞게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수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에 후드 환기 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드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현관 창고, 욕조, 샤워부스,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주방발코니), 실외기실 등 일부 구간은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전열 교환 환기장비는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최하층 세대 제외). 이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밟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설치 부위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니 결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기, 습기 유입을 차단 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 등 유사 시 계단피난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피난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물건 적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기본적으로 하향식 피난구가 공통 설치되나, 최하층 및 필로티 상부 세대는 설치가 제외됩니다. • 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배선공사 등 기능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 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 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 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욕실 단차가 욕안상 다르게 보이거나 기울기가 느껴질 수 있으며,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 세제가 아닌 중성 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화장실) 도어는 ABS소재로 설치되며 단열 및 차음성능은 없습니다. 단, 거실 마감웍션(히든도어)선택 시 침실은 목재도어 설치 선택이 불가합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출입문 또는 빌트인 가구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 창호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인조 대리석과 엔지니어드스톤 등 석재류와 주방 상판 및 벽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욕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줄눈 채움이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콘센트와 배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올림공간(우물천장)의 천장고는 상부 세대 및 당해 층 설비 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 벽체는 시공 시에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및 일반 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계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방 벽, 욕실 벽과 바닥, 발코니 바닥, 현관 바닥, 거실 아트월의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에 게시된 것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 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천장고는 마감재 구배(화장실 등) 및 설비시설로 인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전용타입의 세대여도, 동평면도 구성에 따른 설비공간 계획으로 세대 현관문 진입복도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세대 내부 커튼 박스의 길이, 높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 설비 시설물로 인해 다소 변경 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다용도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 신발의 높이와 관계없습니다. • 욕실 천장의 배기팬과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의 크기는 천장 설비배관에 따라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외부에 설치되는 난간은 미관 및 성능개선을 위해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승강기 및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해 조명기구, 전기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소방시설, 바닥 배수구, 배선 기구류 등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등 타일 구배 및 설비 배관설치 등으로 인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능개선 및 제조사의 사정(단종,변경)에 의해 창호 사양(유리종류, 창틀, 크기, 손잡이, 개폐 방향 등), 단열성능은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전용 테라스에는 저층부에서 올라오는 우수 배관이 설치되며, 소음 및 통기관 부위의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께서는 분양자료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선반은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할 시 사용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 경량 벽체는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조적 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비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장비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천장 높이 및 출입 도어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창호 크기는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여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 창호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 창은 환기배관 등의 설치로 인해 크기, 형태, 재질, 색상, 손잡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 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전도의 우려가 있습니다. 벽체 구조를 확인하시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 도어, ABS 도어, 가구 및 복도 패널 등의 인테리어 마감은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목창호, ABS 도어 손잡이는 본 공사시 색상(유광,무광 포함) 및 형태는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 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 가구류(화장대, 시스템 선반, 붙박이장)도 세대 타입별로 설치 위치 및 사이즈, 디자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일반 가구는 단위세대 평면 계획 및 형별에 따라 설치 위치 및 디자인,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싱크대 하부 장, 상부장 일부는 각종 장비로 인해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및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아일랜드 포함) 하부, 냉장고장 및 붙박이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의 배치, 동선, 복도 폭, 수납량은 세대 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 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고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후면 턱 높이(인조대리석 MMA 시공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온수분배기 가림판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공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 및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에 설치되는 액세서리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내부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 ABS도어,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은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으며,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힌지, 레일 등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배선 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전기 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센서등, 디스플레이 조명은 견본주택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시 점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강마루는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강마루의 코어재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의 분절라인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별 코킹(실란트 등)의 색상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의하여 두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 미시공 부위에 추가 시공될 수도 있습니다. • 네트워크 설비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의 기능이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마감에 의한 줄눈 나누기, 건축 마감재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전기 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 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전기설비기준 판단기준 제171조)변경으로 인해 세대 분전반이 세대 내 벽체에 매립되고, 분전반 커버는 노출 시공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벽면에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평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치 위치 및 장소는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본 제공되는 계약 용량 이외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 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하며, 루버 부근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되며 실 공사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온도, 환기 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 감지기, 소화기, 시각경보장치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 최하층 세대 하부에 각 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 배관이 설치 되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외부 가스배관경로와 가스계량기 위치와 제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 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 조절기(거실용 혹은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공급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개별 난방 방식에 의해 개별로 보일러가 설치되며 보일러 연도가 노출로 설치되어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설계 시 적정 위치를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예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 변경은 불가하며 타입별 식탁등 개수는 상이합니다. • 발코니 / 욕실 / 현관 등 단차 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준공 이후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한 내부 구조의 변경은 불가하며,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시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	--	--

		발코니, 창호, 옥외공간 •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 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단위세대 실외기실 그릴창호는 단열기능이 없는 타입으로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창호 형태, 색상, 사양, 창호프레임 두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102동 137A,B 타입의 경우, 해당 동 배치상 침실, 다용도실, 테라스 등이 비대칭 평면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기간에 함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상 공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 상의 이유로 인해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해지, 변경이 불가하여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 본인이 시공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비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 돌출, 우물 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가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도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하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하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바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옆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확장세대의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 세대 및 확장세대 측벽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위치, 수량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발코니 확장 세대와 다르게 가구 및 조명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서비스 품목이 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시 제공 혹은 선택 가능한 품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및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안방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구와 겸용으로 설치되며 여름철 에어컨 작동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루버창 개방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 안방발코니 바닥슬라브 오픈 부위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상, 하부세대로부터 소음 및 피난구 상부 덮개 위를 지나다닐 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바닥 및 천장 피난구 위치에 물건 적재나 선반을 설치하게 되면 화재 발생시 피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최하층 및 필로티 상부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의 높이, 폭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선희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

		• 발코니는 배수 입상관 또는 생활을 위한 배관이 통과되며 일부 노출되어 미관에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라 단열재 추가 설치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 레벨이 거실 및 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사시는 22mm 투명 로이 복층유리(단, 침실1 분합창 제외)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안전상,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제작사 사양서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 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강화유리난간 상부에 고정형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 두께, 유리색상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등성능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공용부의 창호는 재질, 규격, 사양, 손잡이 형태,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및 공용부 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 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 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 프레임의 구조 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 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 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 고정 방법 등) • 단위세대는 최고 층수 기준에 따라 벽(두께, 길이 등)이 상이하며 위치별로 서비스 면적 유효 폭, 넓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 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및 빌트인, 가전제품 등으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등)의 마감재는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 (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교체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공사 시 마감자재의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바닥재는 목재 재질로 이루어진 마루이며 스팀 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후면과 욕조가 접합 벽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미시공됩니다. • 침실 불박이장의 크기와 디자인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화장대의 가구벽은 배선기구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디자인보다 가구벽의 두께가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도장·마감 재질과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마루 곱들과 주방가구 상판의 인조대리석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부 벽체는 석고보드 경량 벽체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경량 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 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 노출 벽면 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할 수 있습니다.
--	--	--

			• 거실, 화장실, 공용부에 시공되는 타일은 자재 특성상 무늬나 패턴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제작이 일부 패턴이 상이 하고, 자재 자체의 평활도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및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온수 분배기 및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 및 소재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화장실,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 배관, 가스 밸브,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전 인입 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전열교환기(환기시스템)가 설치됨에 따라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빨래건조대 사용과 실외기실 출입문 개폐시 간섭되오니 견본주택 확인 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28층 74㎡형은 상부세대(101동 29층 130㎡형) 테라스가 설치되는 세대의 드레인 배관 설치로 턱이 형성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28층 84㎡B형은 상부세대(101동 29층 130㎡형) 테라스가 설치되는 세대의 드레인 배관 설치로 턱이 형성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26층 84㎡B형은 상부세대(102동 27층 137㎡A형) 테라스가 설치되는 세대의 드레인 배관 설치로 턱이 형성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27층 137㎡B형은 상부세대(102동 28층 137㎡B형) 테라스가 설치되는 세대의 드레인 배관 설치로 턱이 형성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24층 84㎡B형은 상부세대(103동 25층 117㎡B형) 테라스가 설치되는 세대의 드레인 배관 설치로 턱이 형성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2층 143㎡형 세대의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외부에 노출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12층 143㎡형 하부층 주방 및 거실의 천장내 배관과 상부층(103동 13층 143㎡형) 욕실에 설치되는 오수관, 배수관 및 테라스에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 간섭 등으로 인해 발코니1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턱이 형성될 수 있으며, 발코니 상부에 배관이 노출되어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9층 147㎡형 하부층 주방 및 거실의 천장내 배관과 상부층(103동 20층 147㎡형) 욕실에 설치되는 오수관, 배수관 및 테라스가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 간섭 등으로 발코니2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턱이 형성될 수 있으며, 발코니 상부에 배관이 노출되어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25층 148㎡형 하부층 주방 및 거실의 천장내 배관과 상부층(103동 26층 148㎡형) 욕실에 설치되는 오수관, 배수관 및 테라스가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 간섭 등으로 발코니2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턱이 형성될 수 있으며, 발코니 상부에 배관이 노출되어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28층 183㎡형 하부층 침실1 및 거실의 천장내 배관과 상부층(103동 29층 183㎡형) 욕실에 설치되는 오수관, 배수관 및 테라스에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 간섭 등으로 인한 발코니2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턱이 형성될 수 있으며, 발코니 상부에 배관이 노출되어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테라스가 설치되는 세대의 테라스에는 드레인이 설치되는 테라스와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테라스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테라스에는 필요시 선흠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가 설치되는 세대의 테라스에는 드레인이 설치되는 테라스와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테라스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84C 타입의 경우 안방발코니가 부재하여, 청소용 수전 및 빨래건조대가 미설치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기계 설비	

■ 기타 유의사항

-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 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 르네오션고성퍼스트뷰 홈페이지 : <https://www.reneocean.co.kr> 또는 <https://www.르네오션고성퍼스트뷰.kr>

■ 견본주택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1557-1번지 일원

■ 분양문의 : 1666-8848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에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1666-8848)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 및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